

형소법 제106조의 재구성

2014.1.23.

인턴 이동근

INDEX

01 소개

- 1.1 현행 법령 소개
- 1.2 디지털의 개념

02 현행법령 비판

- 2.1 압수의 목적물
- 2.2 범위를 정하여
- 2.3 출력의 문제

03 대안의 제시

- 3.1 압수조항의 적용 세분화
 - 3.2 용어의 정비
 - 3.3 새로운 체계
-

제1장

Intro

- **현행법령 소개**
- **디지털의 개념 정의**

법조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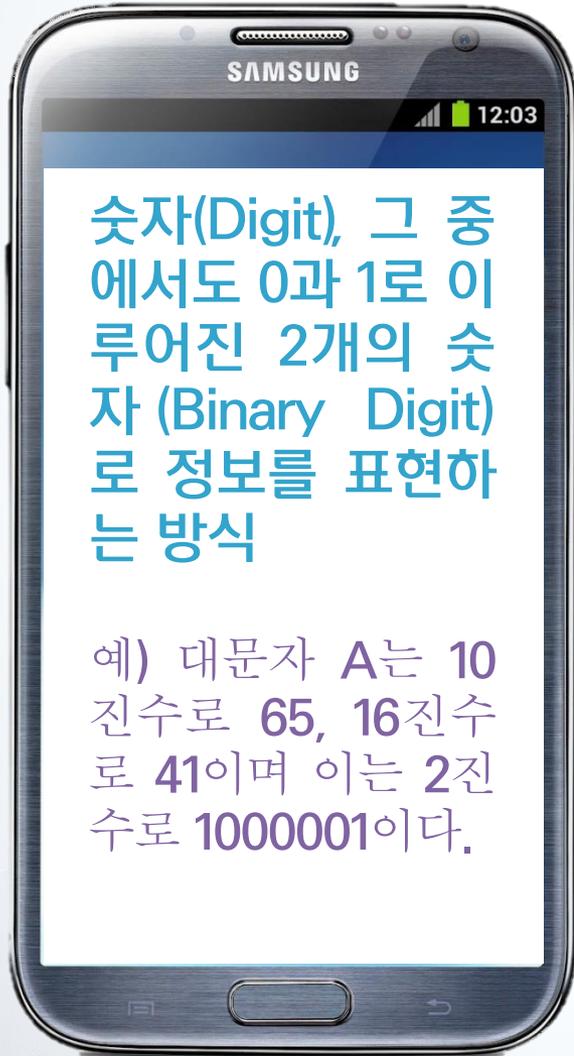
제106조(압수)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. 다만,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**㉠압수**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**㉡압수**할 수 있다.

의문점

- ❖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?
- ❖ 범위를 정하여 : 선별 압수가 가능한가?
- ❖ 출력 : 출력한 문서도 원본이라는 얘기?
- ❖ ㉠의 '압수'와 ㉡의 '압수'는 무슨 차이?



정의



특징

불연속성 : 0과 1로 이루어지므로,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. 0과 1의 그 사이의 '어느 것'은 존재하지 않는다. 따라서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정보는 정확히 구분된다.

매체독립(중립)성 : 불연속성을 가지므로 숫자의 조합만 동일하다면 이는 완전히 동일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. 이는 연속성을 가져서 구별이 불가능한 요소로 표현되는 아날로그와 다르다.

똑같은 Binary면 완전히 똑같다.



디지털은 매체와 무관하다.



1000001



A



1000001

아날로그는 다름.



제2장

현행법령 비판

- 압수의 목적물
- 범위를 정하여(선별압수)
- 출력의 문제

데이터 자체인가? 정보저장매체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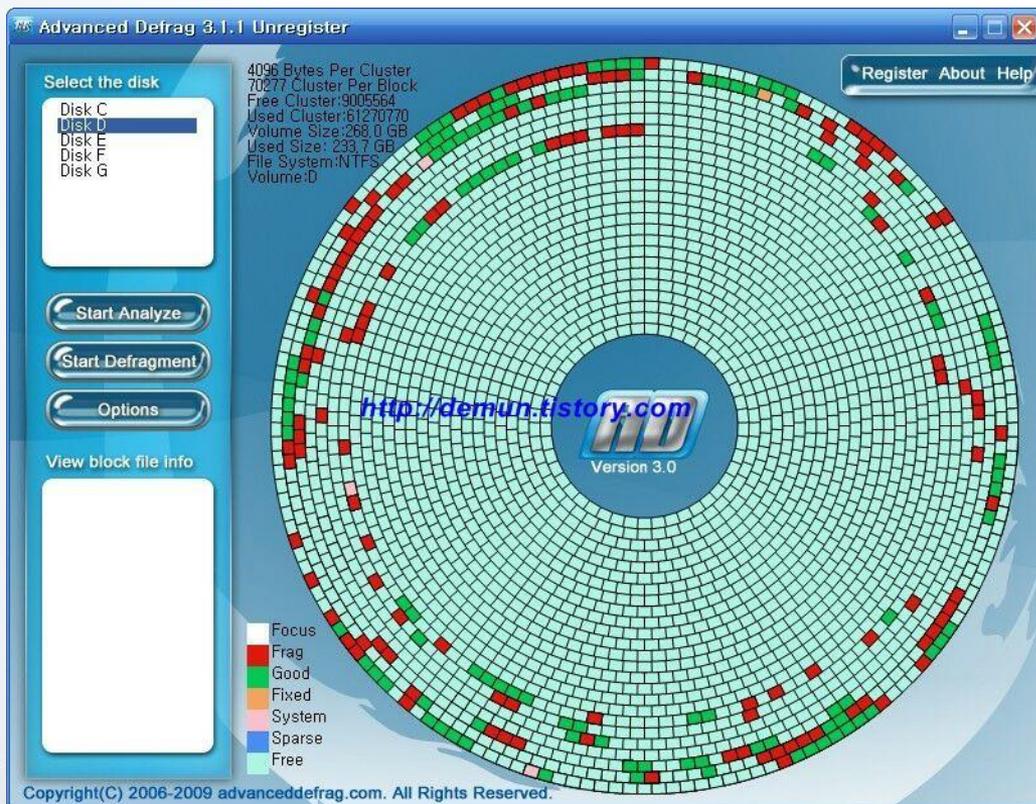
- 압수물은 유체물이라는 편견에서 오는 오류
- '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'라는 문구에서 보듯 정보 자체가 압수의 목적물
- 만약 정보자체가 아니라면 포탈 등 제3자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는 압수가 불가능하다.

㉠의 '압수'는 정보 자체의 압수를 상징. 이 경우 대부분 그 디지털 정보는 금제품일것이므로 원 저장매체에서는 삭제해야 한다. 따라서 '복제'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음

㉡의 '압수'는 정보저장매체의 물리적 압수를 의미. 정보자체의 압수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일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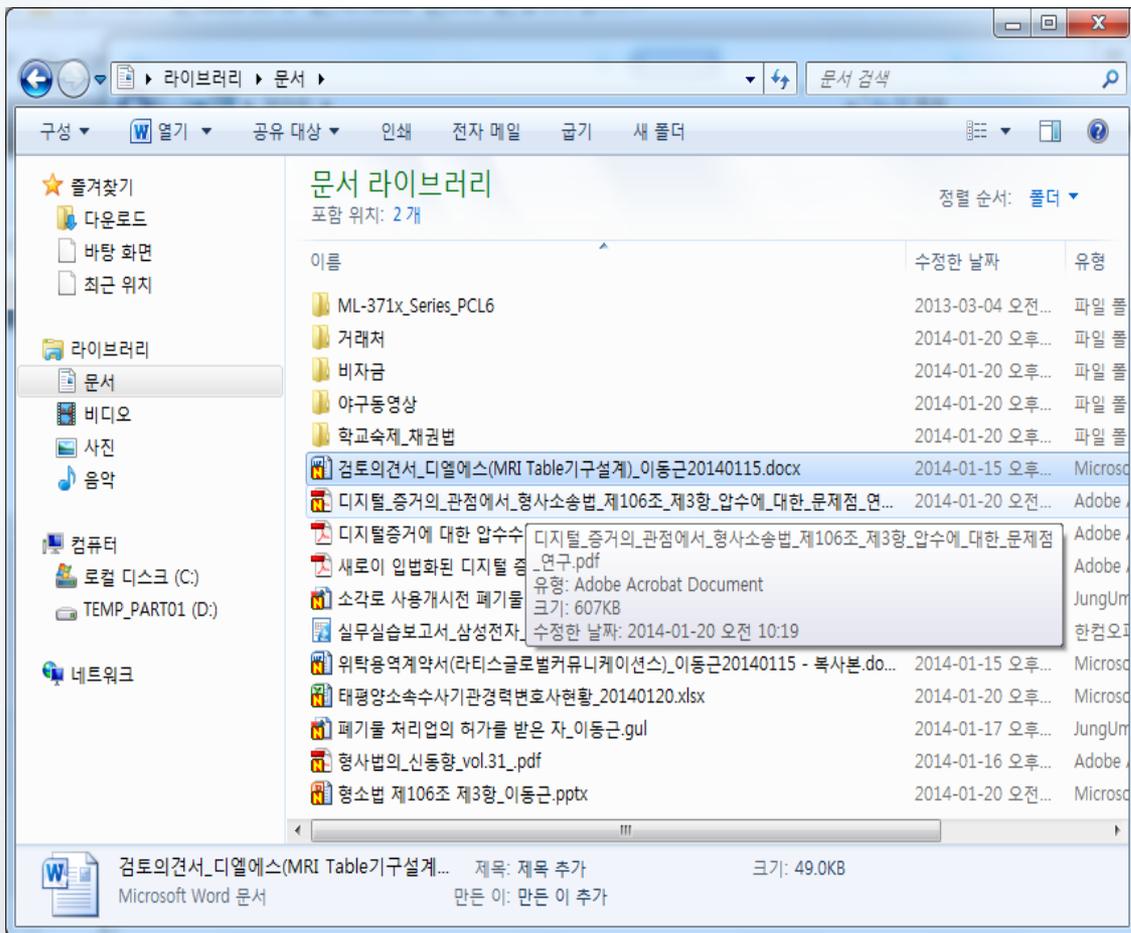


『정보저장매체』 - 물리적 범위를 의미하는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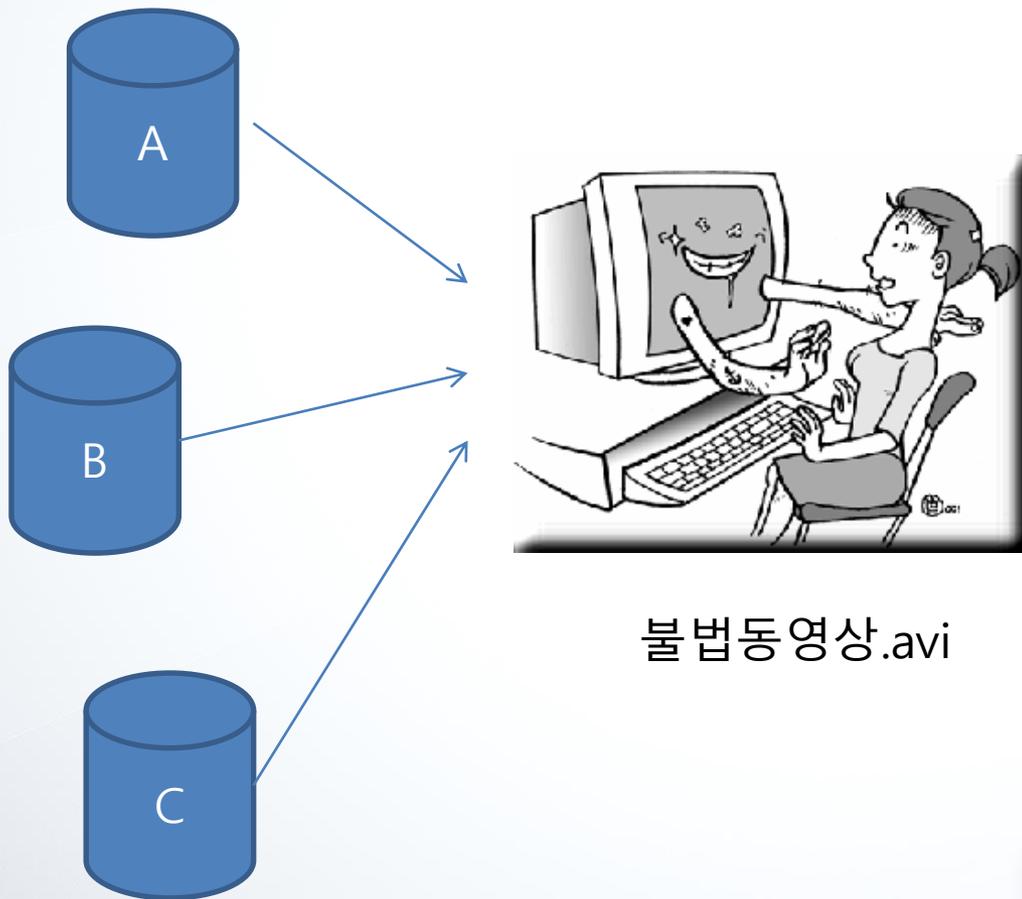
- 데이터는 일정한 섹터에 나란히 모여져 있지 않음.
-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물리적으로 하드 디스크의 일정 섹터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
- 휘발성 저장매체인 램의 경우도 마찬가지

논리적 범위라면, 일반적으로 선별압수가 가능?



-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파악하기 극도로 곤란
- 파일간 링크가 걸려 있을 수 있음
- 차라리 업무에 필요하다면 부분만 복사해 주는 것이 효율적

범위지정은 엄격하게 할 수 없음



A,B,C 세개의 서버에서 각각 분할된 파일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자. 이용자 PC에서는 분할된 파일들을 내려받아서 이를 결합한다. 각 파일들은 그 때에서야 비로소 디지털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.

이 경우 디지털 증거의 범위는 개별 저장매체의 범위보다 넓게 된다. 관련성이 인정되면, 연결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격지 압수수색도 허용해야 한다.

언제 선별압수수색이 가능한가?



제3자가 보관한 디지털 증거 중 특정 개인이 사용, 작성한 것임을 식별 가능한 것

-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, 클라우드 서비스
- 게시판에서 특정 유저, 혹은 아이피 보유자가 작성한 글들

출력가능한 것은 디지털증거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.

-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디지털 파일로 저장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음
- 즉, 동영상, 악성코드, DB등은 출력이 불가능함
- PC에 작성된 원본 파일을 인간이 보기 쉽게 출력한 것이므로 원본과의 진정성 관계인 전문법칙으로 해결하면 족함

출력이 압수인가?

- 출력 후에도 원본 파일을 수정하면 출력된 서류와 원본파일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출력이 압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
- 단지 출력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칙으로 사용하면 족함. 즉 출력 후 작성자의 서명을 받거나 디지털 서명을 받으면 됨.
- 결국 출력하는 경우에도 증거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수할 수 밖에 없음

제3장

대안의 제시

- 압수조항의 적용 세분화
- 용어의 정비
- 새로운 체계

다음과 같이 세분해야 한다.

디지털정보



제106조제3항

정보저장매체



제106조제1항
범죄행위에 ‘공한 물건’ 이므로 만약 PC인 경우에는 모니터, 키보드 등도 포함될 수 있다.

출력물



최소한 ‘디지털증거’ 로서는 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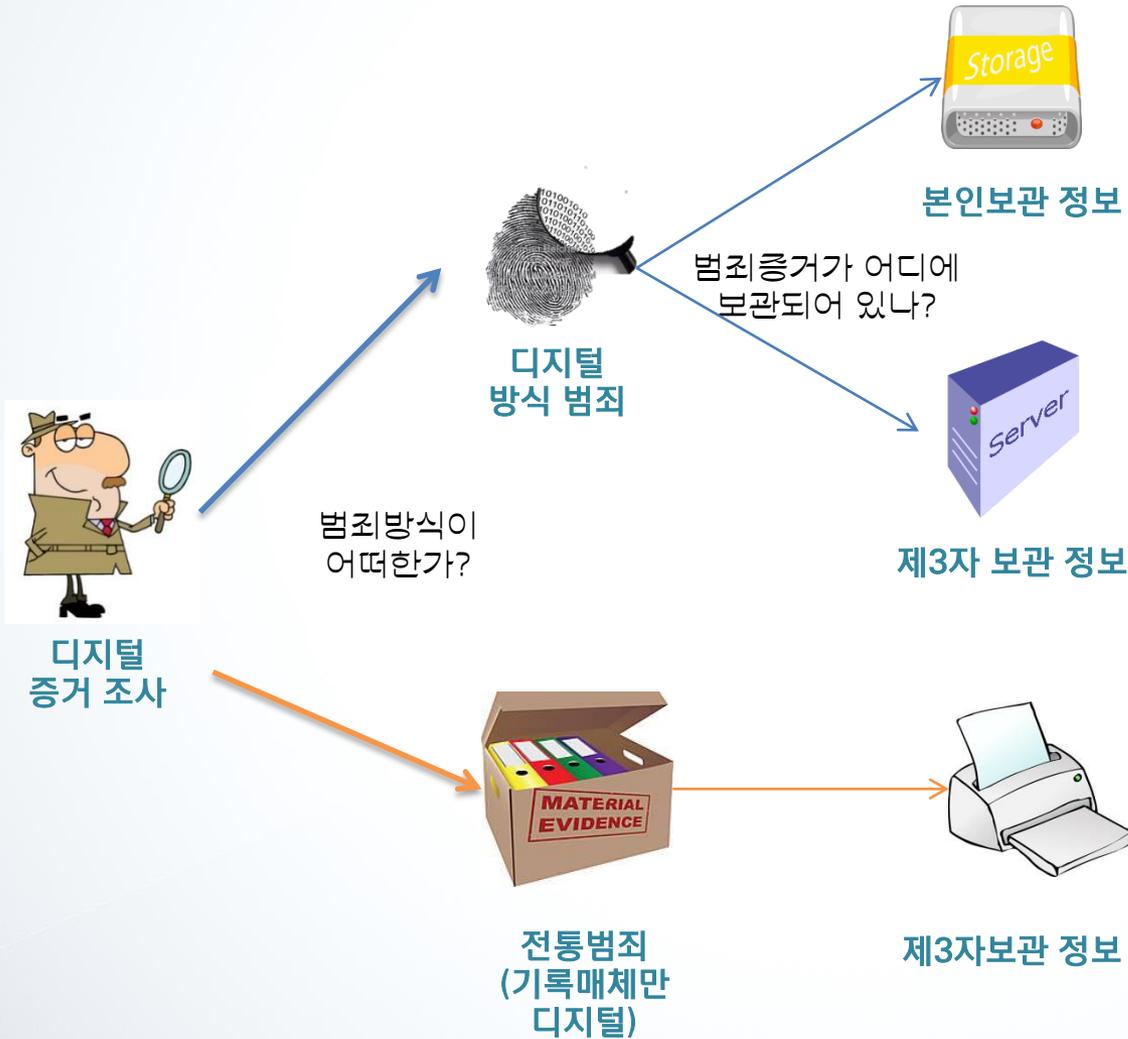
■ 제출명령은 디지털증거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도 인정되는가?

우리 통설은 법원의 압수 중 제출명령은 수사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. 그렇다면, 제3자 보관 디지털증거의 경우 통설을 따른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가?

- 현실을 반영하려면 당연히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에 대해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을 받아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
- 입법적으로는 외국의 협력의무 규정을 도입할 필요 있음

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규정 정비의 필요성

- 디지털 증거 자체만 압수하는 것으로 족할 경우 존재
- 네트워크 상으로 디지털 정보를 강제로 복사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규정 정비 필요
- 통신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통비법상의 통신제한조치로는 불가



- 장비와 함께 압수
- 원격지 정보의 압수 :
기술적 문제
- 복사 원칙
- 정보의 범위 정할 수 있음
- 업체의 협력의무 명시 필요
- 대개 315조 적용
- 서명(디지털 서명)
여부(제313조)

THANK YOU

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